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중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62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허중식 · 채현일 · 윤준병
유동수 · 한민수 · 김동아
안호영 · 이광희 · 이건태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함.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해당 후보자의 정치적 책임성과 대표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가 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

음.

이에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
를 보장하고 보다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
8항제6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8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전 임기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사실이
가. 탈당 여부
나. 탈당일
다.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⑨ ~ ⑭ (생 략)	<u>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u> <u>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u> <u>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u> <u>진하여 탈당한 사실</u> <u>가. 탈당 여부</u> <u>나. 탈당일</u> <u>다.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u> <u>당</u> ⑨ ~ ⑭ (현행과 같음)
--------------------	--